

의안 번호	1982	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9. 7. (금)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9. 7. 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9. 16.(금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
	계	조성액	사용액	
0	1,000,013,690	1,000,013,690	0	1,000,013,690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